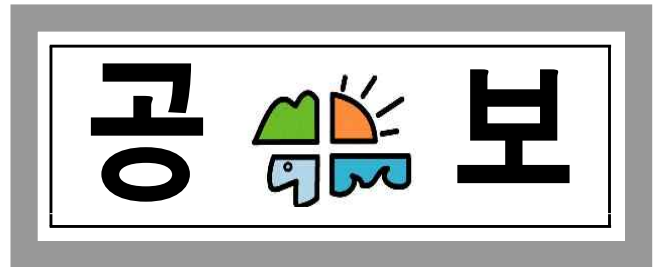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02호 2012년 5월 30일(수)

조 례

-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규 칙

- 속초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 5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5월 30일

속초시조례 제2294호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
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
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u>800cc 이하</u>	<u>80원</u>	1,000cc 이하	18원	<u>1,000cc 이하</u>	<u>80원</u>
1,600cc 이하	18원	<u>1,000cc 이하</u>	<u>100원</u>	1,600cc 이하	18원	<u>1,600cc 이하</u>	<u>140원</u>
2,000cc 이하	19원	<u>1,600cc 이하</u>	<u>140원</u>	2,000cc 이하	19원	<u>1,600cc 초과</u>	<u>200원</u>
2,500cc 이하	19원	<u>2,000cc 이하</u>	<u>200원</u>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u>2,000cc 초과</u>	<u>220원</u>	2,500cc 초과	24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속초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5월 30일

속초시규칙 제1287호

속초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

속초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